

○○○씨 홈페이지 및 인터넷주소 관리위원회규약

제정 : 2007. 04. 07

제 1 조(명칭)

본회의는 ○○○씨 종친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주소 관리위원회라 칭한다.

제 2 조(목적)

본위원회는 ○○○씨 종친회의 특별위원회로서 홈페이지 및 인터넷주소의 유지 관리 개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(임무)

1. 종친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주소의 유지 관리로 종인들의 종친회 활동의 참여의식을 고취(鼓吹)시키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.
2. 종원의 중심축이 되어 정보교환 및 종친회 활동의 홍보와 자유로운 의견 개진으로 종원들의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.
3. 종친회 홈페이지 내에 인터넷주소를 포함시켜 20년 또는 30년 단위로 제작하던 주소를 등재할 내용이 발생 시 마다 수시 접수하여 정기적으로 인터넷주소에 등재함으로서 신규 주소등재와 기존 내용의 수정 보완 등 변경내용을 신속하고 현실성 있게 유지 관리한다.

제 4 조(임직원의 정수 및 선임)

1.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 및 직원을 둔다.

① 위원장 : 1인	② 부위원장 : 1인	③ 감사 : 1인
④ 위원 : 5인 내외	⑤ 상임위원 : 1인	⑥ 관리자 : 1인
2. 임원 및 직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서 종친회(대중회) 회장이 된다.
 - ② 부회장 및 감사의 최초 임명은 종친회 총회에서 행하고 다음부터는 종친회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 - ③ 위원 및 상임위원, 관리자는 위원장이 위촉한다.
3. 임원 및 직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제 5 조(임원 및 직원의 임무)

임원 및 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.
2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. 감사는 본 위원회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.
4. 상임위원은 총무, 재정업무를 담당한다.
5. 관리자는 부위원장, 위원, 상임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홈페이지 및 인터넷주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.

제 6 조(위원회 회의)

1. 정기 및 수시 회의

- ①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기타 필요시에는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고 서면 및 인터넷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.
- ② 소집회의는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2.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정족수
 -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, 부위원장, 감사, 위원,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단, 서면 및 인터넷 회의 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참여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- 3.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- ① 위원회 규약의 개정
 - ② 인터넷즉보 등재 종류 및 등재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
 - ③ 기타 홈페이지 및 인터넷 즉보 유지 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

제 7 조(재정)

본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- 1. 종친회(대중회)의 지원금
- 2. 찬조금
- 3. 인터넷즉보 등재 수수료(수단금)
- 4. 세보 편찬위원회로부터 승계된 자금

제 8 조(결산 보고)

홈페이지 및 인터넷즉보 유지 관리에 대한 세입 세출의 결산을 종친회 총회 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9 조(회계년도)

본 위원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【부 칙】

제 1 조(경과규정)

2004년 3월 27일 제정한 ○○○씨 세보편찬위원회 규약은 본 규약의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제반업무는 본위원회가 승계한다.

제 2 조(시행일)

본 규약은 세보 발간을 완료 배포 후 인터넷즉보 제작 계약일로부터 시행하되 사전준비를 위한 필요한 사항들은 종친회 총회 결의일 부터 시행한다.

【인터넷즉보 등재 수수료 및 절차에 관한 규정】

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종친회 인터넷(internet)즉보의 유지관리를 위한 도메인 및 서버(Server) 사용료와 추가 등재(수시로 접수하는 출생, 사망, 사진등재 등)에 따른 비용의 충당을 위한 수수료 및 등재에 따른 절차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등재 수수료)

인터넷즉보 추가 등재에 따른 종류별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.

- 1. 신규 등재
 - ① ○○○씨의 성년 남자 및 여자 1인당 : 20,000원

- ② ○○○씨의 미성년 남자 및 여자 1인당 : 15,000원
- 2. 기존 족보 등재된 자에 대한 내용변경
 - ① 기존등재자의 내용추가 및 정정 : 1건당 10,000(성명, 생년월일, 자(字)·호(號), 이력 및 경력, 사망 연월일, 묘지,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 등재 등, 단 2007년 10월 30일까지 제출자는 무료)
 - ② 출가녀의 자녀등재(외손) : 무료
- 3. 사진의 등재
 - ① 생존 및 사망자의 사진 : 1장당 15,000원(인물, 묘소위치도, 훈·포장 등)
 - ② 기존 등재된 사진의 교체 : 1장당 5,000원
- 4. 기타 등재 사유 발생

위 3개 항목의 사례에 준하여 결정하되 새로운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 3 조(등재 신청)

인터넷 족보에 등재할 내용은 별첨 양식(양식1)에 의하여 서면 또는 이메일(E-mail)로 제출하되 증빙을 요하는 사항은 자료의 사본을 첨부하고 사진 등은 이면에 디지털 사진은 파일명에 성명을 기재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.

제 4 조(등재)

- ① 최초 인터넷족보를 구축하여 가동하고 난 이후 인터넷족보에 추가 등재할 시기는 수집된 추가 등재자료의 등재료가 등재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시점을 원칙으로 하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.
- ② 제출된 사진의 경우 편집사정에 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.

【부 칙】

제 1 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○○○씨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관리위원회